

대구지방법원 2017. 5. 17 선고 2016가단290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2. 5. 25 선고 2021나1061(본소), 2021나327640(반소)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17. 5. 17 선고 2016가단2908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종결 2017. 4. 26.

판결선고 2017. 5. 17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경상북도 칠곡군 C 임야 1643㎡ 중 별지 도면 표시(1)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세멘벽돌조 양철스레트지붕 주택 71㎡을 철거하고,(2)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주택 10㎡을 철거하고,(3) (ㄱ), (ㄴ), (ㄷ), (ㄹ), (ㅁ)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A)부분 토지 239㎡를 인도하고,

나. 경상북도 칠곡군 D 임야 1025㎡ 중 별지 도면 표시(1)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

선내 (가)부분 세멘벽돌조 세멘지붕 화장실 2㎡를 철거하고,(2)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콘테이너 1동, 수목 및 가설물을 각 철거하고,(3) (ㄱ), (ㄴ), (ㄷ), (ㄹ), (ㅁ), (ㅇ), (ㅂ), (ㅅ), (ㅇ), (ㅈ), (ㅊ)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(B)부분 토지 162㎡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어재원

별지